

수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98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7. 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6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21. 1. 20. 체결된 6,9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갑 제23호증(예금거래내역서)과 비교해보면 피고가 을 제9호증(입금증)에서 2021. 1. 25. 09:43:49경 36,578,240원이 출금된 기록을 빼는 방법으로 을 제9호증을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3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은 피고가 2021. 1. 25. 09:31:47 I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I조합 계좌’라고 한다)에 36,778,240원을 입금한 사실, I조합이 같은 날 09:43:49경 I조합 계좌에서 36,578,240원을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대출에 사용된 계좌이다. 이하 ‘C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200,000원을 법무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갑 제23호증에 기재된 09:43:49경 36,578,240원 출금은 I조합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9호증은 피고가 I조합 계좌에 36,778,240원을 입금하면서 작성한 서류이므로 여기에 I조합이 한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갑 제21호증을 보면 C이 2021. 1. 25. 36,578,24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갑 제21호증(전자전표)에 “2021. 1. 25. 09:44:49 입금 C”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에는 입금받는 쪽의 계좌번호란에 C 계좌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바로 윗부분에 “일반대출(일반) (완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 25. 09:43:49경 C 계좌에 36,578,240원을 입금한 자는 I조합이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I조합이 그 직후인 2021. 1. 25. 09:44:49경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완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갑 제21호증은 C이 36,578,240원을 입금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

게다가 매수인인 G는 매매대금을 전부 H에게 지급하였고 구체적으로 2021. 1. 22.

10,200,000원을, 2021. 1. 29. 합계 91,8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I조합 계좌에

36,778,240원을 입금한 것은 2021. 1. 25.이고 H이 피고에게 39,880,850원을 지급한 것은 2021. 2. 1.이다. 즉 피고가 I조합에 36,778,240원을 입금했을 당시 G가 H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10,200,000원밖에 되지 않았다(이는 H과 G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G 또는 H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I조합에 36,778,24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잔대금 지급 이전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증거신청을 철회한 을 제3호증의 1, 2를 제1심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은 C 계좌에 관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이고, 을 제3호증의 2는 L 명의의 계좌에 관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이므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 제1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전용수, 판사 박수미